



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

[시행 2021. 2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15호, 2021. 2. 1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외국인력담당관), 044-202-7150

외국인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.

부칙 <제2021-15호, 2021.2.1.>

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 이후 근로계약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